



시 보



제1733호 2026. 3. 9. (월)

고시 · 공고

- 목포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정 발령 2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6
-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2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시 훈령 제875호

「목포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한다.

2026년 3월 9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목포시 소속 청원경찰의 인사, 복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라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
2. “인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원, 현원, 채용, 배치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속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목포시, 목포시 의회사무국 소속 청원경찰에게 적용한다.

제2장 정 원

제4조(정원 관리) ① 청원경찰의 정원 및 근무지별 인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청원경찰의 신규 배치와 정원 변경은 인력수요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부서에서 관리한다.

제3장 인 사

제5조(채용) 청원경찰의 채용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청원경찰법령”이라 한다.)에 따르되, 채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배치 및 전보) 청원경찰은 인사부서에서 중요시설의 유무, 정·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되, 필요한 경우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① 소속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교육
2.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직무교육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직무교육 이외의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분증명서)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복 무

제9조(의무 등) 청원경찰의 의무 등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복제) ① 청원경찰은 근무 중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근무지 및 직무) ①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소속부서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업무는 소속부서의 장이 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하되 근무지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및 차량 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그 밖에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부서의 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근무지 여건에 따라 소속부서의 장이 결정하되, 주간·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근무하며 부서의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근무할 수 있다.

1. 주간 근무시간 : 9시부터 18시까지

2. 야간 근무시간 : 18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출장) 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는 출장으로 보지 않는다.

② 출장 여비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비상근무) ① 소속부서의 장은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에게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이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때에는 청사경비,

화재, 그 밖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감독자 지정) ① 소속부서의 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감독자로 지정하여 다른 청원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 지정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별표12와 같다.

제16조(휴가) 청원경찰의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휴직 및 명예퇴직)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을 준용한다.

제5장 보수 및 후생복지

제18조(보수)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에 따른다.

제19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 산입되는 경력 및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후생복지) 청원경찰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장 표창 및 징계

제21조(표창) 시장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22조(징계)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령과 「목포시 청원경찰 징계 규정」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23조(준용) 청원경찰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원경찰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목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목포시 공무원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청원경찰 부분을 삭제한다.

[별표 1]

☐ 청원경찰 정원표(제4조 관련)

부 서 별	계	경비,청원경찰	비 고
총 계	21	21	
소 계	9	9	
자 치 행 정 과	4	4	
스 포 츠 산 업 과	3	3	
건 설 과	2	2	
소 계	2	2	
의 회 사 무 국	2	2	
소 계	10	10	
수 도 과	2	2	
문 예 시 설 관 리 사 무 소	1	1	
체 육 시 설 관 리 사 무 소	3	3	
목 포 자 연 사 박 물 관	1	1	
환 경 시 설 관 리 사 무 소	3	3	

입 법 예 고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
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투자유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등 규정 마련
 - 위촉위원의 임기 2년, 두 차례 연임 가능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및 부적격(비위 등)위원 해촉 규정 신설

3. 개정시행규칙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관계법령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5. 입법예고 : 2026. 3. 9. ~ 3. 30.(21일간)

6.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전략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처 : 58724, 목포시 수문로 32, 3층(전략산업과)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4310), 직접방문 등

7. 기타사항

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전략산업과(☎ 061-270-8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동일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① (생 략)	제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u>당 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 성하되</u> ,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장· 부시장·기획관리국장·미래전략산 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목 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의 원중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 ----- <u>당</u> <u>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u> <u>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u> ,----- ----- ----- ----- ----- ----- --.
제3조 ③ (생 략)	제3조 ③ (현행과 같음)
④ 목포시의회 의원인 위원과 목 포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 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며 <u>연임할 수 있 다.</u>	④ ----- ----- ----- ----- ----- <u>동일 위원회에</u> <u>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u> <u>도록 하여야 한다.</u>
⑤ (생 략) 제4조의2(신설)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

제4조의3(신설)

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 제31조 (생략)

제5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의견제출서

조 례 명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의 견 제 출 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 소			
조 례 안 조 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3월 9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입 법 예 고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9일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보조금 지원기준(한도) 및 지원시기 등을 도 조례 및 현행 지급 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보조금 지급·관리에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지원기준(한도) 및 지원시기 변경
 - (입지보조금) 분양가 50% → 30%, 최대 3억원 → 최대 4억원
 - 영업활동 시작 후 지원 → 착공 시 70%, 공장등록시 30%
 - (시설보조금) 설비금액 2% → 20억 초과 투자액의 5%, 최대 2억원 → 최대 5억원

3. 개정시행규칙안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4. 관계법령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5. 입법예고 : 2026. 3. 9. ~ 3. 30.(21일간)

6.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 별도 첨부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전략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제출처 : 58724, 목포시 수문로 32, 3층(전략산업과)
-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4310), 직접방문 등

7. 기타사항

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전략산업과(☎ 061-270-8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중 “3억원”을 “4억원”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4호 중 “당해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 당 2억원까지”를 “20억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5억원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토지 등의 매입비는 등기 완료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 지원한다”를 “입지보조금은 착공 신고 시 전체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장등록 시에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지원기준) ① 제13조의 대상 기업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한다.	제14조(지원기준) ① ----- ----- ----- ----- -----.
1. 입지보조금은 정상 분양가·매입비 또는 정상 임대료의 <u>50퍼센트</u> 범위 안에서 기업 당 <u>3억원</u>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	1. ----- ----- <u>30퍼센트</u> ----- <u>4억원</u> -----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시설보조금은 <u>당해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 당 2억원까지</u> 지원할 수 있다.	4. ----- <u>20억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5억원까지</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 제28조 (생략)	제15조 ~ 제28조 (현행과 같음)
제29조(지원기준) ①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시기	제14조(지원기준) ① ----- -----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등의 매입비는 등기 완료
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 지
원한다.

2. ~ 5. (생 략)

제30조 ~ 제33조 (생 략)

-----.

1. 입지보조금은 착공 신고 시 전
체 지급액의 7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장등록 시에 지급한
다.

2. ~ 5. (현행과 같음)

제30조 ~ 제33조 (현행과 같음)

의견제출서

조례명	목포시 국내·외기업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의견제출자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조례안 조문	검토의견(의견제출 내용)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3월 9일 제출자 (서명) 목포시장 귀하				

입 법 예 고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 9.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목포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2. 주요내용

-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 제고 (안 제7조제2항)
-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안 제9조의2)

3. 조례개정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감사실) : 의견없음
- 성별영향평가(여성가족과) : 의견없음

6.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촉직 위원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